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2018.2.22(목) 10:00, 이숙진 차관(여성가족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입니다.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스톱·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톱·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톱·데이트폭력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제고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스톱·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TF 그리고 스톱·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단체, 여성계 그리고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톱 행위와 연인 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스톱·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가해자 엄정처벌을 통한 범죄 동기 근절,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

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대책의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부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 범죄는 양형단계에서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입니다.

현장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도 112 신고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 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유기적,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 범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여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외에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활용하여 상담, 일시보호, 법률상담, 치

료회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과 연계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인근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통합상담소 20개, 성폭력상담소 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83개소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366센터에서는 전국 18개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한 달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에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성폭력, 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며, 일반 국민 대상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에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여성단체 등과도 협조하여서 국민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부는 관련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등 과제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 대책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현재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 특별점검, 신고활성화 및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보완하여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부는 공공부문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성희롱과 성폭력을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부 기조실장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해서는 지난 8월부터 법무부 그리고 다른 외부 민간 각 부처와 민간까지 참여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안은 마련됐고, 그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해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수위를 징역형까지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데이트폭력범죄 같은 경우

에는 ‘적정형량’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처벌 수위가 같지 않은 이유 좀 궁금하고요.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먼저, 스토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계속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집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든지 하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면이 있거든요. 결국,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아예 입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게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으로 데이트폭력에 관한 것은 데이트폭력은 지금도 어떤 남녀가 연인관계에 있는데 거기서 폭행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폭행이든지 아니면 상해든지 협박이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 있습니다. 근거법률은 있는데, 그게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구속기준, 구공... 단순히 벌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구공판 기준, 이러한 사건처리 기준을 조금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리하는 것이라 양쪽이 좀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질문> 여기서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한다고 할 때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의의 경우 어떻게 잡고 계신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령 채권추심이랄지 아니면 취재 이유랄지 해서 쫓아다니거나 집 앞에 서 있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볼 건지 그리고 성별이나 가령 이런 것 어디로 볼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보면 스토킹처벌법에는 그럼 데이트폭력은 안 들어가고 스토킹 관련해서만 규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 규정은 다른 나라 입법을 지금 참고해서 어느 정도 시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취재나 이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일회적인 것은 안 되고 이게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줘야 한다는 것을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데이트폭력 관련해서는 어떤 연인관계에서도 연인관계가 해소됐다고든지 거의 절연을 해서 ‘너 더 이상 만나지 마.’ 하는데 쫓아다니는 그런 것은 당연히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연인관계 데이트폭력에서도 이게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면 원래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예방교육이나 대국민 홍보, 뭐 현행도 실시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번 발표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나 확대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답변> 대국민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된 예방교육 부분의 내용들을 반드시 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변화된 부분이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히 법무부와 경찰청이 함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게 됐는데 이 종합대책에 따라서 향후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공익광고라든가 관련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금 현재 내부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에 성폭력 관련해서 법들이 굉장히 많이 형법이나 특별법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따로 특별법을 만든 취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답변>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성폭력이나 그쪽 범죄에는 안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의 속담으로 ‘열 번 짚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않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애감정을 갖고 상대방을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끼는데 쫓아다니는 게 과연 예전에, 이 스토킹법이 다른 나라에서도 100년, 200년 된 법은 아닙니다. 대체로 2000년 전후로 도입이 되고 한 법인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까지 과연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 부분도 그래도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어떤 스토킹이란 게, 예를 들면 지진의 전조라 그럴까요? 스토킹이 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살인이나 납치나 이렇게 강력범죄로 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어떤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걸 처벌 범주에 이제 넣어야겠다, 하는 취지가 이번에 스토킹처벌법 제정 취지이고요.

말씀하신 성폭력이나 이런, 기존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과는... 그 법으로는 처벌이 안 됐던 영역을 이제 처벌의 범위로 포섭을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미투운동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현재 문화계에서 계속 미투운동이 확산돼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래서 후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11월에 이미 관련된 공공부분의 성희롱 대책에 대해서 이미 기 발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검찰에서의 내부 성폭행 관련, 성추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민간 부문 영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미투 참여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알림,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부에서 좀 더 겸허히, 엄중히 잘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에서 좀 더 합동으로 관련된, 좀 더 엄정한 대책들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거의 대책 수립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현재 공공부문에 먼저 제안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점검과 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를 아울러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과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초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공공부문에 제안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계를 포함하여 여타의 다른 영역에까지도, 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법무부에서 법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가해자가 처벌 후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예방 대책도 있으신지 하는 거와, 또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해서 여러 의원법안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들하고의 어떤 관련성이나 뭐를 바탕으로 지금 시안을 마련하셨는지 이런 것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게 단순히 처벌강화, 그러니까 스토킹처벌법의...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큰 꼭지는 하나 이게 징역으로 해서 처벌한다는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기 단계에 가

해자의 가해행위를 중단시키는 것 그리고 중단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가 일어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거기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 법원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취해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통신금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신속한 가해행위의 중단과 재발방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입법으로는 여러 법이 나와 있는데 의원입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어떤 형사처벌의 한계,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논란이 안 될 수 있도록 엑기스라고 그럴까, 중추적인 내용만 뽑아서 저희가 정리했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요구는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투운동과 관련해서 성폭력 신고 부처가 각 부처별로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통합되어야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발표하신다는 내용에 관계부처, 신고에 대한 관계부처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피해자께서 굉장한 결심을 하시고 그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 오로지 하나의 신고 창구만이 개설되어있는 것이, 즉, 통합된 하나의 창구만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피해자 분들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여러 다른 어려움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좋

은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 피해자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의 별도의 마련은 또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창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